

탐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김정화*, 홍안유*,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탐정학교수*

Finding Ways to Enhancing Public Institution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Kim Jung-Hwa*, Hong An-Yoo*, Yeom Keon-Ryeong**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Criminology*,

Professor, Major on Private Investigation Study, Dept. Public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요 약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노출되어 안전문제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실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 이에 사법기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고자 민간조사업인 탐정산업이 생겨났으나, 영업활동에 법규나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탐정의 법제화 이전에 탐정업이라는 민간치안서비스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탐정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사례, 제도를 연구하고 비교분석하여 공공성 모델을 차용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탐정의 공적 사회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는 탐정산업의 민간조사기능과 사회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영역의 감시기능이 결합되어, 공경선거 감시기능과 환경범죄 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전문탐정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탐정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공익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향상시키는 사회적 도구로 탐정산업이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탐정, 탐정산업, 공공성, 공익탐정, 공익성

Abstract Citizens living in modern society are exposed to various types of crime,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safety issues, and have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crime in reality. Accordingly, efforts are being made to prepare response plans at the judicial agency level and strengthen security services, but the reality is that various limitations are being revealed. To complement and replace this,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was created, but since there are no laws or restrictions on business activities, social side effects are occurring.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the policy direction to secure public institutionalization in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area of private investigation before the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To this end, we focused on borrowing a public model by studying and comparatively analyzing previous studies, cases, and systems related to the domestic and foreign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Through this, it must be developed in a way that improves the public and social functions of private investigation. This is a combin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fun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and the surveillance function of specialized areas with specialized knowledge in each social field, it is to expand the scope of public interest private investigator who play the role of such as the fair election surveillance function and environmental crime surveillance function. By increasing public interest as an essential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will be established as a social tool that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nd improves their rights.

Key Words :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Public Institutionalization, Public Interest-Oriented Private Investigator, Public Interest

Received 30 Jul 2024, Revised 19 Sep 2024

Accepted 26 Sep 2024

Corresponding Author: Yeom Keon Ryeo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kicl2001@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들어, 부부간 살인사건, 온라인 유인을 통한 살인사건, 마약을 사용한 이후의 환각 강력범죄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의 범죄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기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고심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UN은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도를 세계 20위권으로 정한 바가 있으며, 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라는 명성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느껴지는 범죄에 대한 체감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며, 치안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다(허명범, 2022 : 12) [1] .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업의 활성화, 민간경호산업의 체계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기계경비 시스템 기술개발의 국가적 지원, 탐정 및 민간조사서비스의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다. 민간경비업과 민간탐정업(신변보호업)은 경비업법의 제정을 통해 경찰청이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며, 기계경비산업 역시도 삼성이나 KT, SK와 같은 국내 굴지의 전자기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유달리 뒤쳐지는 산업영역이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민간조사업으로 불리는 탐정업이다. 2020년도부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거하여 본격적으로 문이 개방되어 탐정업은 군웅할거(群雄割據)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시장의 복잡함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와 사회적 부작용도 역시 불거지고 있다(김정화, 2023 : 3-4)[2] [2] .

이와 관련하여 학계와 탐정업계에서는 탐정관련 법률의 제정을 국가가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 업계에서도 자신들의 업무 동반자로서 탐정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따라서 치안서비스의 민간지원 분야로서 탐정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탐정업의 표준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발판으로 탐정법을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탐정의 법제화 이전에 탐정업이라는 민간 치안서비스의 한 영역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

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보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탐정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지를 분석하여, 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이나 민사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소송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해외의 탐정활동 사례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외 탐정업과 관련한 선행연구, 탐정의 공공성과 관련한 학술연구논문 및 관련 서적, 해외의 탐정제도에 관한 저술이나 연구논문, 그리고 해외 탐정의 공공성과 관련한 연구자료를 찾아 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제도적인 모델링을 위해 다른 산업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공성 모델을 차용하는데 주력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실증적으로 탐정의 공공성을 구체화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법제화 미비로 인해 어렵다는 점이며, 비록 탐정업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많은 탐정업자와 탐정법인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탐정업을 미래의 새로운 인력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만 바라보는 관점만 존재한다면 탐정업의 발전이 정체되거나 또는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이를 수 있다. 더욱이 과거 여러 정부들이 민간정보업의 활성화가 국가안보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명분을 들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발전의 제약조건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염건령·박영수, 2021) [3] .

비록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마지막으로 탐정시장이 개방된 국가라 하더라도 탐정업의 발전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주력 전문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탐정이라는 직업과 탐정서비스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성이라는 영역에 대한 많은 연구와 이와 관련한 정책적 제안 및 방안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도 그 노력의 일부로서 진행하게 되었다.

2. 탐정의 정의와 유형

2.1. 탐정의 정의

탐정에 대한 정의는 국내 학자들의 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먼저 조성구는 “탐정은 민간영역에서 계약에 의해 보수를 받고 의뢰인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다(정일석, 2008) [4].

박동균과 김태민은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영리기업에게 그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나 정보를 찾아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라고 탐정을 정의하였다. 이들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영역에 소속되지 않는 민간사업자로서의 탐정을 정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박동균·김태민, 2013) [5].

최호택은 “개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화재예방상담, 필체감정 등과 조사, 감시, 보호 등을 위한 지문채취, 거짓말탐지 및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단순한 사실조사나 평판조사, 실태조사업무만을 탐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최호택, 2020) [6].

염건령과 민수진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 사실을 조사하는 사업자이며, 단순한 사실조사보고만을 하는 것이 아닌 사안의 내용이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과정이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문가”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의 정의에서 조사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사안의 내부적인 본질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전문가라는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염건령·민수진, 2018) [7].

2.2. 탐정의 유형

탐정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고객이 의뢰하는 사건을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일반탐정과 특정 영역의 사건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문탐정의 영역으로 나뉜다. 여러 탐정학자들이 탐정의 유형구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허명범·김권호·염건령, 2023) [8].

2.2.1. 법률탐정

첫째, 법률탐정(LPI; Legal Private Investigator)이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EU 소속 여러 국가들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전문탐정유형이다. 주로 소송과 관련한 증인(Witness)의 확보, 확보된 증인이나 목격자로부터의 추가적 증거나 증언(Testimony)의 수집, 법정에서 필요

한 증거(Evidence)의 확보와 법적 능력(Liability)의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담당한다. 미국의 일부 LPI회사들은 증인이나 법정소송의 당사자인 의뢰인을 경호(Body Guarding)하는 업무까지도 수행하고 있다(최호택, 2020) [9].

2.2.2. 보험탐정

둘째로 보험탐정(IPI; Insurance Private Investigator)이 있는데 보험사기(Insurance Fraud)와 관련한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4년 4월 16일 손해보험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해동안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보험사기사건 관련 신고건수는 총 4,414건이며, 이 가운데 3,462건(78.4%)이 보험사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사기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이었다. 이들 유형은 사고조작(89.3%)으로 구분되며, 전체 보험사기범죄의 대부분에 해당하였다(손해보험협회, 2024) [10].

전문가들은 한 해에 1조원 이상의 보험관련 사기사건이 국내 피해액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이나 호주,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탐정산업을 보험범죄의 중요한 대응책으로 육성,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 보험사의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권일성, 2021) [11].

2.2.3. 사이버탐정

셋째, 사이버탐정(CPI; Cyber Private Investigator)이 있다.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개인관련 문제와 사회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들의 권익보호를 지원하는 집단을 말한다.

온라인상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이나 악의적인 사용 및 정보유출, 특정 개인에 대한 온라인 공격행위,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 온라인 해킹 등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을 적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최근에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발전하면서 AI의 악의적 공격형태에 대한 대응집단으로 사이버탐정이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이상경, 2021) [12].

사이버탐정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민간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네트워크

(On-Line Network) 관련 기술을 일반인들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로 인한 개인의 인적, 물적, 명예적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호하거나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전문지원가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사이버탐정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사이버 증거자료의 채택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버탐정이 하는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다(이도현, 2020) [13].

2.2.4. 부동산탐정

네번째 전문탐정 유형으로서 부동산 전문탐정(REPI; Real Estate Private Investigator)이 있다. 이들은 부동산이라는 조사객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성을 발휘하여 민간영역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집단을 말한다.

부동산전문탐정이 주로 하는 활동영역은 무등록 부동산업자에 의한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기획부동산), 차명(借名) 부동산의 실소유주 조사, 유치권자의 유치권(留置權) 행사과정의 불법행위 유무조사, 재개발 지역의 조합관련 부정선거 및 조합비 불법사용 조사, 채권추심 회피를 위한 부동산 은닉행위 조사, 부동산 개발정보 불법확보를 통한 투기행위 조사 등 아주 다양하다(김민수, 2021) [14].

최근에 기획부동산에 의한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많은 시민이 이로 인한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나 국세청, 경찰청의 수사와 조사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부동산탐정의 활동을 통한 재산권 침해 실태의 파악 및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강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상수·염건령, 2022) [15].

2.2.5. 교통사고탐정

교통사고 조사 전문탐정(TAPI; Traffic Accident Private Investigator)은 교통사고 관련 분쟁에 대한 조사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탐정영역을 말한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탐정선진국에서도 가장 오래 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탐정영역이다(정일석, 2008) [16].

교통사고탐정이 하는 업무의 유형에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사건에서의 가해자 피해자 확인조사, 도로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

제조물 책임자(자동차 제조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의 조사(급발진 사고 등), 교통사고 관련 보험범죄행위 조사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2023년도 차량등록대수는 무려 25,949,201대일 정도로 많은 차량을 보유한 나라이다(KOSIS, 2024) [17]. 그만큼 이와 관련한 사건사고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한 법률적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변호사를 기반으로 한 법률시장에서 차량관련 사건이 주요한 아이템으로 등장할 정도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조사 전문탐정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2.6. 기타 전문탐정

위 이외의 전문탐정 영역으로 저작권 전문탐정, 실종가출자 전문탐정, 반려동물 전문탐정, 평판조사 전문탐정, 기업 전문탐정, 신용조사 전문탐정, 사이버종교 전문탐정, 사이버언론 전문탐정, 부정선거활동 감시전문탐정, 환경오염 전문조사탐정, 도감청 대응전문탐정 등이 있다(김태수·염건령, 2018) [18].

앞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가 더 커지고 개인간, 집단간의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개별적으로 전문화하는 탐정영역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예상된다(최영인·염건령, 2015) [19]. 다만, 이렇게 산업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사익추구 목적의 탐정산업만 급속하게 성장해서는 안 되며, 공익적 차원에서 활동하고 시민의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탐정의 전문영역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3. 탐정의 공공성 관련이론 분석

3.1.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Social Safety Service Co-Production Theory)은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이론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의 대상을 치안서비스라는 영역으로 한정된 것이다. 우선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이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민간기업이나 민간주체와 협업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최선우, 2000) [20].

대표적으로 공적 복지서비스(Public Welfare Service)

나 의료서비스(Medical Care Service), 교통관련 서비스(Public Traffic Service)의 협업생산을 들 수 있는데, 민간기관이나 기업에 공공복지업무를 배정하거나 같이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공공교통관련 업무체계 내에 민간업자나 기업, 사업자 등을 투입하는 경우 등이 있다. 원래는 공공서비스의 위탁이라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적으로 공적 영역이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서비스 운영의 공동주체로서 민간영역이나 부문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은 범죄예방이나 범죄의 조사 및 수사, 기타 치안과 관련한 공적 영역에 민간업자나 기업, 조직 등을 협업적 차원에서 끌어들이어 치안서비스의 품질과 시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손능수, 2007) [21].

우리나라에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초기 모델로 도입된 것이 청원경찰(請願警察) 제도와 민간경비(民間警備) 제도이며, 점차적으로 민간경호와 시설경비, 탐정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 필요한 근거 내지는 이유로 여러 학자들이 다음의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손상철, 2011) [22].

첫째, 경찰이 활용가능한 치안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체가 필요해지게 되었다. 2019년도부터 각 광역지방경찰청 단위로 미제사건 전담조사팀 제도(Cold Case Investigation Team)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미제사건 조사 공공탐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

둘째,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정을 통해 시민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안전의 강화(Strengthening Community Safety)가 가능해진다. 민간경비나 탐정과 같은 민간주체의 활용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이 어떠한 위험요소(Risk Factor)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민간과 치안주체기관인 경찰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김상민·선준호·염건령, 2023) [23].

셋째, 시민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의 능동성과 대응성이 강화될 수 있다. 탐정제도가 오래 전부터 발전한 일본의 경우에 치안서비스의 협업주체로

서 탐정업이 존재하며, 이들이 경찰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조사업무를 개별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치안서비스 제공망의 구멍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조사나 노인학대 및 방임에 대한 조사(Domestic Violence PI),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조사(Pet PI), 산업스파이 활동이나 산업기술 유출사실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탐정의 협업적 활동(Anti-Espionage PI)이 가지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본전국경비협회, 2022) [24].

3.2. 민영화이론

민영화이론(Private Management Theory)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을 기반으로 이를 민간영역에서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방향을 의미한다.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가 세계 경제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발된 이론이며, 공공재의 무조건적인 무한정 공급은 언젠가는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전제조건을 가진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재정을 기초로 한 공공복지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였으며, 2002년도와 2008년도의 세계 금융위기(World Economic Crisis)가 발생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때문에 민영화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민간에 그 권한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탐정업이 대표적인 공공치안서비스 영역에서 민영화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넓은 의미에서의 민영화 이론은 치안서비스와 관련한 국가의 전반적인 업무대상 영역을 축소함을 말한다. 기업이나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호와 개인의 자산에 대한 보호 및 권리의 보호를 민간영역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며, 앞서 언급한 청원경찰, 민간경호, 민간경비 등의 산업을 활성화하여 일정 부분 치안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작용이 가능하였다(이상해, 2013) [25].

좁은 의미로 본다면, 치안서비스의 일부 영역을 민간산업에 이양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더 많은 치안자원(Public Security Resource)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다시 말해서, 탐정과 같은 치안서비스의 협업산업(Co-Operative Industry)의 인력을 공적 치안에 투입함

으로써 치안담당 기관인 경찰의 과부하와 인력 및 자원의 부족현상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영화이론이 탐정산업의 발전과 공익적 역할에 기반이 되는 것은 치안서비스 가운데 탐정시장이 존재함으로써 고객인 시민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의미도 가진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치안, 안전관련 서비스를 선택이나 비판의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받아야 했지만 탐정업과 같은 민영화 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안전이나 권익 보장과 관련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한홍태, 2000) [26].

이는 변호사 시장의 활성화에서도 그 예와 효과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극히 제한적인 인력만이 법조인이 되던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Law School System)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시장으로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들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법률 지원을 받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 이제는 보편화되었으며, 공적인 법률지원이 아닌 민간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통한 법률서비스 구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3.3. 수익자부담이론

수익자부담이론(受益者負擔理論, 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은 어떠한 특정한 재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을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민간 영역에서 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비자(Consumer) 또는 수익자(Beneficiary)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세금이나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비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비용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광현, 2019) [27].

하지만 일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막대한 재정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예로 민간사업자의 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한 도로(민자도로)나 전철(민자투자전철), 교량(민자교량) 등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들 수 있다.

국민의 치안과 관련한 영역에서도 수익자부담원칙

이 일부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 영역이 인력경비와 민간경호, 호송경비, 시설경비 등이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경찰이 전역 무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특별히 범죄나 테러, 안전 등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대비를 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수익자가 고충주가 되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정남철, 2006) [28].

초기에는 앞서 언급한 청원경찰제도로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인력경비, 호송경비(현금수송 등),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경호 등에서 적극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탐정분야도 이 수익자부담원칙의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사료된다.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체적 안전이나 사회명예적 안전, 경제적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를 비용을 들여 고용한 후 이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과 관련한 조사서비스를 받는 것이다(노진거·김일곤, 2021) [29].

일본과 독일의 탐정업인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묶이고 있는데, 이는 탐정업 또한 해당 국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유료서비스업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향후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안전자원(Safety Resource), 치안자원(Security Resource)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탐정업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4. 공동화이론

공동화이론(Vacuum Theory)은 특정한 사회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별도의 메울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개발하여 투입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학이론이다. 미국과 일본, 중남미의 조직범죄(組織犯罪, Organized Crime)를 연구하던 사회학자들이 특정 조직이 사멸하거나 자신이 활동하던 구역에서 힘을 잃게 되면, 주변의 작은 다른 조직이 세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조직이 나타나서 공백으로 남은 기존의 조직이 가지고 있던 영역을 메우게 된다는 연구로부터 나왔다(함중영, 2021) [30].

이는 범죄에 대응하는 치안서비스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제(Mechanism)를 보인다. 특정 영역에서 치안상의 공백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해당 영역이 혼란이 초

래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역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책집단, 시민집단, 자발적 집단 등에 의해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치안공백의 메우작용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민간경비(Private Security), 민간경호(Body Guard Service), 기계경비(Technical Equipment Security), 탐정업(Private Investigation), 수송경비(Transportation Security) 등이 치안공백을 메우기 위한 재료로 활용되며, 이는 자생적인 보호력의 강화라는 사회심리학적인 움직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조성구·김태민, 2012) [31]. 우리 사회가 최근에 탐정업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탐정과 관련한 언론기사와 전문 프로그램, 유튜브 방송 등이 증가하는 것인 우리 사회의 치안관련 공백을 탐정이라는 시멘트로 메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작용이라고 판단된다.

4. 탐정의 공적 사회기능의 방향

4.1. 공정선거 감시기능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이 시급한 공공성 탐정영역(공익탐정)으로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들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선거에는 대선(대통령선거, 5년), 총선(국회의원선거, 4년), 지선(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 4년), 조합장선거(농협, 축협, 수협, 임협 등의 협동조합장선거, 4년 :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25년부터 직선제도 통합선거 실시예정) 등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선거관리를 담당하고 있다(허석재, 2024) [32].

<표 1> 22대 국회의원선거 유형별 수사 현황

구분	유형	건수(비율)
5대 선거범죄	금품수수	172 (10.2%)
	허위사실유포	669 (39.8%)
	공무원 선거 관여	48 (2.9%)
	선거 폭력	90 (5.4%)
	불법단체동원	9 (0.5%)
기타 선거범죄	사전선거운동	73 (4.3%)
	불법 인쇄물 배부	54 (3.2%)
	현수막 벽보 훼손	227 (13.5%)
	기타	339 (20.2%)
인원 (명)		1,681

<출처>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사현황자료(2024. 4. 11).

<표 2>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사현황 비교기준

구분	제22대	제21대	대비
5대 선거범죄	금품수수	172 (10.2%)	109 (8.1%) +63 (57.8%↑)
	허위사실유포	669 (39.8%)	317 (23.5%) +352 (111%↑)
	공무원 선거 관여	48 (2.9%)	15 (1.1%) +33 (220%↑)
	선거 폭력	90 (5.4%)	116 (8.6%) -26 (22.4%↓)
기타 선거범죄	불법단체동원	9 (0.5%)	3 (0.2%) +6 (200%↑)
	사전선거운동	73 (4.3%)	71 (5.3%) +2 (2.8%↑)
	불법 인쇄물 배부	54 (3.2%)	102 (7.6%) -48 (47.1%↓)
	현수막 벽보 훼손	227 (13.5%)	230 (17%) -3 (1.3%↓)
	기타	339 (20.2%)	387 (28.6%) -48 (12.4%↓)
인원(명)	1,681	1,135	+331 (24.5%↑)

<출처>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사현황자료(2024. 4. 11).

문제는 작은 규모의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으로 전국적 규모의 선거에 대한 모든 감시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2024년에 시행된 전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경찰청의 선거사범 집중수사과정에서 무려 1,167건에 1,681명이 선거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조치 되었으며, 1차 수사결과에서 46명을 ‘혐의 있음’으로 결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경찰청, 2024) [33].

지방선거 이외에도 대통령선거, 조합장 선거 등에서 많은 선거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및 감시에 대한 보완적 전문가집단으로서 탐정의 활동이 필요하다.

탐정이 선거운동기간에 감시 및 고발이 가능한 불법선거활동에는 ① 범죄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의 유포, ② 금품의 수수와 제공, ③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 관여, ④ 선거운동원에 대한 공격과 폭력행사, ⑤ 후보자에 대한 사이버 공격, ⑥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⑦ 기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있다(김선화, 2023) [34].

불법선거운동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사는 탐정의 도입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방선거관리

위원회, 경찰의 부정선거 감시 및 단속에 대한 업무과중을 덜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된다.

4.2. 환경범죄 감시기능

다음으로 불법 환경오염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Environment Pollution)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사회대상 범죄로 보고 적극적인 단속 및 처벌에 나서고 있다.

환경범죄에 관한 단속권은 경찰청(대부분의 환경범죄), 해양경찰청(해양관련 환경범죄), 지방환경청(지역 환경범죄), 강유역관리청(4대강 유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법경찰(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범죄), 산림청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산림관련 환경범죄) 등으로 나뉘며, 이 이외에도 많은 공공기관이 환경범죄에 대한 조사, 단속, 수사권을 가진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35].

문제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환경범죄(Environment Crime)를 수사 단속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빈틈을 노리고 환경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2024년에 발표한 환경범죄의 유형에는 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오염행위, ② 장마철 집중호우기에 오펀수 무단방류, ③ 황사가 심한 날에 오염물질 대기배출, ④ 차량정비 불량으로 인한 유해배기가스 배출, ⑤ 페인트 도장업체의 오염방지 조치 미비로 인한 오염물 대기중 배출, ⑥ 대규모 양돈·양축시설의 분뇨 무단방류, ⑦ 건축폐기물의 무단 폐기, ⑧ 건축공사장의 비산먼지 방지조치 미비 등 무려 100여 가지 유형이 있다(최선두, 2022) [36].

<표 3> 연도별 환경사범 형사사건 처리현황(12-21년)

연도별	처리현황
2012년	11,161명
2013년	11,810명
2014년	10,954명
2015년	10,730명
2016년	12,062명
2017년	13,439명
2018년	11,668명

2019년	13,469명
2020년	14,018명
2021년	14,078명

<출처> 대검찰청(검찰통계시스템)

정부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보받기 위해서 ‘국번 없이 128’ 또는 핸드폰에서 ‘지역번호 + 128’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보와 신고의 수준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탐정선국들은 많은 수의 환경관련 전문탐정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에 의해서 드러나기 어려운 환경관련 범죄행위들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 2000)’라는 영화는 전문탐정(변호사 겸업)이 주변 마을에 환경오염을 불러와 많은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과학적으로 집요하게 조사한 미국 탐정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화한 내용이며, 그만큼 환경전문 탐정활동(EPI: Environment Private Investigator)이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염건령·박영수, 2021) [37].

우리의 경우, 각 탐정협회나 탐정아카데미, 대학의 탐정학과 등이 ‘환경범죄조사(Environment Crime Investigation)’라는 과목을 만들어 예비탐정 교육에 반영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환경부나 기상청, 각 지방정부가 나서서 환경공익탐정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3. 복지범죄 감시기능

사회복지에 국가예산으로 1년간 쓰이는 돈은 무려 205조원(2023년도)에 이르고 있으며, 공적 연금, 노동복지,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보훈복지, 아동보육사업, 여성복지, 가족복지, 주거 및 주택복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었다(대한민국 국회, 2023) [38].

<표 4> 복지분야 부문별 2022년 본예산 대비 2023년 예산안 (단위:백만원)

복지분야 부문별	22년 본예산	23년 예산안
사회복지 분야	194,953,267	205,836,401
고용	25,938,300	23,613,660
고용노동일반	604,495	634,045

공적연금	63,009,558	71,323,568
기초생활보장	16,763,782	19,135,491
노동	10,073,550	10,787,566
노인	20,459,160	23,114,318
보훈	5,930,835	6,218,159
사회복지일반	947,295	1,010,289
아동·보육	9,182,730	9,821,844
여성·가족·청소년	1,428,872	1,512,975
주택	35,826,273	33,460,004
취약계층지원	4,788,417	5,204,482

<출처> 대한민국 국회(예산심사자료)

200조원이 넘는 복지예산이 사용되는데 이와 관련한 감시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이다. 물론, 개별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일일이 각 공공기관에서 감사 및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복지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횡령되는 부분을 전부 확인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김진석, 2024) [39].

따라서 민간복지 및 공공복지분야에 사용되는 예산 운용이나 사업집행과 관련한 민간감시체계(Private Surveillance System)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 이를 위한 전문조사집단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공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2배 이상의 복지예산을 사용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민감시와 고발체계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0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탐정집단의 활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법적인 복지기금운용이나 사회사업과 관련한 비리를 제보할 경우에 일정비용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탐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① 노인복지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나 노인지원관련 비용의 횡령, ② 사망한 노인을 그대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여 복지지원비용을 받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 ③ 아동복지 및 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또는 방임행위의 감시, ④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착취나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황명준, 2018) [40].

우리나라도 전체 국가예산의 1/3 가량을 복지예산에 사용하는 상황 하에서 이제는 복지관련 공익탐정

제도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복지관련 기관에서 발생하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반인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향후 공익탐정(Private Investigator for Public Interest)의 한 영역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5. 결론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의 경제규모가 확장되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 하에서 시민의 감시기능(Private Eye)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탐정활동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미 법률 전문탐정, 저작권보호 전문탐정, 반려동물 전문탐정, 산업스파이 대응전문탐정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세분화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업에서의 강점은 도입이 늦었다 하더라도 빠르게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발전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변호사업, 창조업, 금융서비스업, 엔터테인먼트사업, 영화산업 등 실로 단시간에 세계적으로 성장한 서비스산업의 영역이 다수 있으며, 탐정업도 이러한 빠른 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탐정산업의 발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공익성의 증대가 존재한다. 공익성이 없는 탐정업은 자칫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으며, 과거 ‘불법홍신업자’나 ‘불법채권추심업자’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까지 있다.

따라서 탐정업의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각 탐정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 이외의 공익적 탐정활동 영역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발전시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향상시키는 사회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 사회의 경제 규모가 더욱 커지고, 다양한 유형의 직업이 나타나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수반될 것이며, 이에 대한 민간 차원의 전문대응가 집단으로서 탐정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탐정업자와 탐정업계 역시도 탐정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계속 개발하여 이를 시민들을 위한 도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의식의 전환을 확대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허명범(2022). “탐정법제화에 있어서 부패범죄 방지를 위한 탐정의 전문성 제고 방안”,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정화(2023). “탐정제도의 공공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AHP를 통한 우선순위 분석”,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염건령·박영수(2021). “범죄수사에서 탐정의 공익적 보완 역할”,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2호, pp.107-128, 한국경찰연구학회.
- [4] 정일석(2008).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박동균·김태민(2013). “영국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 및 한국적 함의”, 한국행정학회보, pp.1331-1337, 한국행정학회.
- [6] 최호택(2020). “공공재로써 공인탐정이 가지는 직업적 가치와 타당성”, 한국융합논문지, 제11권 제2호, pp.199-205, 한국융합학회.
- [7] 염건령·민수진(2018). “탐정 조사활동의 기본 원칙과 이념에 대한 고찰”, (계간)미스터리, 제14권 제3호(통권62호), pp.29-50, 한국추리작가협회.
- [8] 허명범·김권호·염건령(2023). “디지털 관련 사회문제와 탐정의 역할”, 산업진흥연구, 제8권 제4호, pp.177-186, 산업진흥원.
- [9] 최호택(2020). “공공재로써 공인탐정이 가지는 직업적 가치와 타당성”, 한국융합논문지, 제11권 제2호, pp.199-205, 한국융합학회.
- [10] 손해보험협회(2024). “보험사기실태 보고서”, 손해보험협회.
- [11] 권일성(2021).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과 탐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이상경(2021). “공인탐정을 위한 사이버 포렌식 활용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이도현(2020). “탐정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김민수(2021). “탐정의 업무수행시 채권관리에 관한 법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상수·염건령(2022). 탐정학개론, 서울 : 대영문화사.
- [16] 정일석(2008).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KOSIS(2024). “국내 차량보유대수 현황”, 통계청.
- [18] 김태수·염건령. “공인탐정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고찰”, (계간)미스터리, 제16권 제1호, 통권59호, pp.35-57, 한국추리작가협회.
- [19] 최영인·염건령(2015). “외국 사설탐정 제도의 비교적 이해”, (계간)미스터리, 제13권 제3호, 통권49호, pp.7-32, 한국추리작가협회.
- [20] 최선우(2000).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1] 손능수(2007). “순찰지구대 체제하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2호, pp.79-106, 한국정책과학학회.
- [22] 손상철(2011).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7권, pp.131-162, 한국민간경비학회.
- [23] 김상민·선준호·염건령(2023).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8권 제4호, pp.241-250, 산업진흥원.
- [24] 일본전국경비협회(2022). “일본 탐정산업 조사보고서, 2022”, 일본전국경비협회.
- [25] 이상해(2013). “치안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가능성과 한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pp.531-55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6] 한홍태(2000). “경찰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비기능의 민영화 방안”, 시큐리티연구, 제3호, pp.306-335, 한국경호경비학회.
- [27] 라광현(2019). “미국 민간보안 산업의 지역사회 공공 치안 서비스로의 확장; 휴스턴

Sharpstown 사례 및 시카고 Special Service Area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제1호 통권50호, pp.47-68, 한국민간경비학회.

- [28] 정남철(2006). “효율적인 경찰집행을 위한 새로운 작용형식의 활용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22집, pp.6-159,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 [29] 노진거·김일곤(2021).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통권 제89호, pp.143-174, 한국경찰학회.
- [30] 함중영(2021). 초국가적 조직범죄 연구; 국제범죄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로,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 [31] 조성구·김태민(2012).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2호, pp.241-267, 한국경찰학회.
- [32] 허석재(2024).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방안”,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 [33] 경찰청(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사현황자료”, 경찰청.
- [34] 김선화(2023).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 [35]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20). 환경범죄 수사강화를 위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방안 연구, 환경부.
- [36] 최선두(2022).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 정책방향”, (월간)환경기술, 통권344호, pp.2-8, 환경관리연구소.
- [37] 염건령·박영수(2021). “범죄수사에서 탐정의 공익적 보완 역할”,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2호, pp.107-128, 한국경찰연구학회.
- [38] 대한민국 국회(2023). 2023년도 예산내역안, 대한민국 국회.
- [39] 김진석(2024). “2024년 예산안은 약자복지에 대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소셜 워커(Social Worker), 통권 제254호, pp.39-4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40] 황명준(2018). “일본 탐정제도의 법제화와 운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제69집, pp.271-295, 한국법학회.

김정화 (Kim Jung Hwa)



- 2021년 9월~202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2023년 9월~현재 :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탐정학박사과정 재학
- 2022년 1월~현재 : 한국범죄학회 이사
- 관심분야 : 탐정학, 행정학
- E-Mail : acc78179340@gmail.com

홍안유 (Hong An Yoo)



- 2021년 3월~2023년 8월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2023년 9월~현재 :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탐정학박사과정 재학
- 2023년 9월~현재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관심분야 : 탐정학, 행정학
- E-Mail : wangbiee@naver.com

염건령 (Yeom Keon Ryeong)



- 2000년 08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경찰학)
- 2011년 08월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교육학박사)
- 2023년 9월~현재 :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탐정학)
- 관심분야 : 행정학, 탐정학, 통계
- E-Mail : kicl2001@naver.com